◆종◆돈◆부◆분◆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돈장 인증요령

농 림 부

※ 농림부 고시 제1996-58호(1996.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축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종돈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 및 방역관리가 우수한 종돈사육농장의 인증요령 및 등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가축전염병」, 「가축방역관」, 「종축업」, 「종돈」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과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우수종돈장인증대상) ①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이하 "우수종돈장"이라 한다)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축업의 등록을 한 종돈사육농장(이하 "종돈장"이라 한다)에 한한다.

②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종돈장은 시·도 가축위생시험 소장(지소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충청북도는 농축산사업소장,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장,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해당농장에 대한 제5조 제1항이 전염병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대상 전염병 중(돼지오제스키병을 포함하여) 5종이상의

전염병이 1년간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검사대상 전염병중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 종돈장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검사신청, 검사기관 및 검사성적 회신) ① 제5조 제1항의 전염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염병 검사신청서를 종돈장 관할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종돈장 인증을 위한 종돈장의 전염병 검사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는 농축산사업소,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확인검사는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과학연구소가 실시한다.

③ 검사신청을 받은 시험소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검사성적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대상 전염병, 검사기준 및 방법) ① 종돈장의 검사대상 전염병은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위축성비염, 돼지부루세라병, 돼지적리, 톡소플라즈마병, 유행성폐렴 및 돼지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전염병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인증신청등) ①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관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며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증신청서 제출시 당해 종돈장을 관할하는 시험소장이 발행한 제4조 제3항의 전염병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신청서를 받은 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연구소장에게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전염병검사성적서를, 축산기술연구소장에게는 당해 종돈장의 우수종돈확보 및 분양실적, 종돈분양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술정보 제공실적, 양돈업계간의 신뢰성등을 각각 검증토록 하여야 한다.

③ 수의과학연구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제2항의 전염병검사성적서 및 해당 종돈장의 종돈관리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검증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 검사를 실시케 할 수 있다.

④ 수의과학연구소장에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제2항과 제3항의 검증·확인 검사결과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종돈장인증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종돈장인증심의위원회) ① 우수종돈장 인증과 등급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의과학연구소에 우수종돈장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의과학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 소속 관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농리부 축산관 가축위생과 소속 관계 공

무원 1인

2. 수의과학연구소 관련업무 담당과장

3.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장

4. 우수종돈장인증대상 종돈장 관할 시도 축산(축정)과 소속 관계 공무원 및 시험소장 각 1인

5. 축산·수의관련대학 교수, 축협중앙회·대한양돈협회·양돈산학연구회·한국종축개량협회등 축산 관련단체와 축산농가, 가축질병병성 감정실시기관 및 축산수의 전문가중 7인 이내

④ 우수종돈장인증과 등급은 위원회 구성인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에 필요한 세부심의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수의과학연수소 병리진단과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이 간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수의과학연구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이 검증·확인검사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인증취소 및 등급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종돈장 인증 및 등급에 관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등급기준) ① 우수종돈장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등급별 기준은 제5조 제1항의 검사대상 전염병의 발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1등급 : 검사대상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2. 2등급 : 검사대상 전염병중 5종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제10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내용 변경등) ①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수종돈장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우수종돈장인증표지를 교부한 후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위원회에서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되지 아니한 종돈장 대표자에게 인증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은 종돈장의 대표자가 인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수종돈장인증변경신청서를 수의과학 연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우수종돈장인증변경신청서를 받은 수의과학연구소장은 변경신청사유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우수종돈장인증서를 변경 교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비용 지원)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종돈장인증 대상종돈장의 전염병 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소 및 수의과학연구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종돈장의 준수사항) 수의과학연수소장으로부터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은 종돈장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종돈장위생관리요령(농림수산부고시 제1994-13호)의 이행
2. 관할시험소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 수검 및 협조
3. 농장내 종돈에 대한 질병예찰, 종돈의 분양, 이동 및 도축, 예방접종, 죽은 종돈에 대한 병성감정실시사항 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주요사항을 매 분기마다 관할 시험소장에게 보고
4.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규정 이행

제13조(사후관리) ① 우수종돈장 관할 시험소장은 해당농장의 종돈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의 검사대상전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소장은 우수종돈장에서 제5조 제1항의 검사대상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제1항의 검사결과 전염병발생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그 사실을 수의과학연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우수종돈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표지를 회수하거나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2항의 전염병 발생(우수종돈장인증서에 기재된 비발생 전염병에 한한다.)
2. 제12조의 우수종돈장의 준수사항 위반

제14조(인증제도 운영 세부사항) ①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외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은 종돈장의 홍보방법
2. 인증표지의 상품표시 사용 또는 광고허용범위
3. 우수종돈장인증표시 제작 및 부착방법
4. 기타 이요령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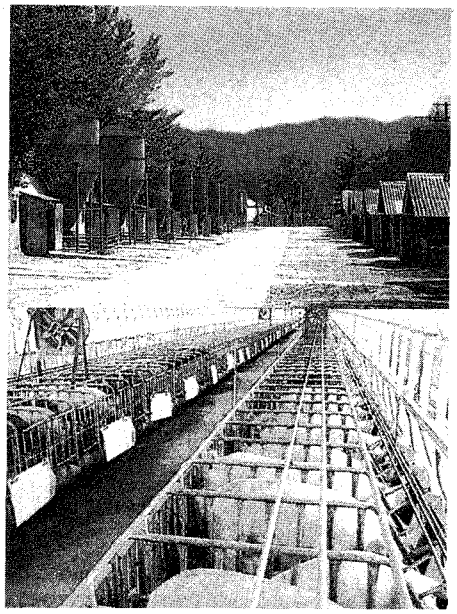

[별표 1]

전염병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1. 임상검사

○ 가축방역관이 매분기마다 대상농장을 방문하여 검사대상 질병별로 임상증상 유무를 관찰한다.

2. 정밀검사

가. 오제스키병

(1) 검사주기 : 6개월

(2) 사육규모별 최소검사 대상두수

번 식 돈 군		육 성 돈 군	
사육두수	검사대상두수	사육두수	검사대상두수
100두 이하	25두	500두 이하	20두
101~200	27	501~1,000	30
201~500	28	1,001~5,000	50
501두이상	30	5,001~10,000	70
		10,001두이상	100

(3)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부고시)"에 의함

나. 위축성비염

(1) 검사주기 : 6개월

(2) 검사대상두수 : 도축장 출하돼지 10두 이상

(3)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비갑개골 검사(절단부위 : 제1전구치 및 제2전구치 사이)결과를 계측봉으로 측정하고 지수 3이상을 양성으로 함